

PATENT ASSIGNMEN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1

SUBMISSION TYPE:	NEW ASSIGNMENT
NATURE OF CONVEYANCE:	CHANGE OF NAME
CONVEYING PARTY DATA	
Name	Execution Date
GMARKET INC.	08/31/2011
RECEIVING PARTY DATA	
Name:	eBay Korea Co., Ltd.
Street Address:	737, Yeoksam-dong, Gangnam-gu
Internal Address:	Gangnam Finance Center
City:	Seoul
State/Country:	KOREA, REPUBLIC OF
PROPERTY NUMBERS Total: 1	
Property Type	Number
Application Number:	12747350
CORRESPONDENCE DATA	
Fax Number:	4129455933
<i>Correspondence will be sent via US Mail when the fax attempt is unsuccessful.</i>	
Phone:	412-471-8815
Email:	assignments@webblaw.com
Correspondent Name:	The Webb Law Firm
Address Line 1:	420 Ft. Duquesne Blvd., Suite 1200
Address Line 4:	Pittsburgh, PENNSYLVANIA 15222
ATTORNEY DOCKET NUMBER:	5866-101468
NAME OF SUBMITTER:	Richard L. Byrne
<p>Total Attachments: 39 source=ScannedRecordationFormCoverSheet#page1.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4.tif</p>	

OP \$40.00 12747350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5.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6.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7.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8.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9.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0.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1.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2.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3.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4.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5.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6.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7.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8.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19.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0.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1.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2.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3.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4.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5.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6.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7.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8.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29.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0.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1.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2.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3.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4.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5.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6.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7.tif
source=ScannedChangeofName#page38.tif

**RECORDATION FORM COVER SHEET
PATENTS ONLY**

To the Director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lease record the attached documents or the new address(es) below.

1. Name of conveying party(ies)

GMARKET INC.

Additional name(s) of conveying party(ies) attached? Yes No

3. Nature of conveyance/Execution Date(s):

Execution Date(s) August 31, 2011

- Assignment Merger
- Security Agreement Change of Name
- Joint Research Agreement
- Government Interest Assignment
- Executive Order 9424, Confirmatory License
- Other _____

2.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party(ies)

Name: eBay Korea Co., Ltd.

Internal Address: Gangnam Finance Center

Street Address: 737, Yeoksam-dong, Gangnam-Gu

City: Seoul

State: _____

Country: REPUBLIC OF KOREA Zip: _____

Additional name(s) & address(es) attached? Yes No

4. Application or patent number(s):

This document is being filed together with a new application.

A. Patent Application No.(s)

12/747,350

B. Patent No.(s)

Additional numbers attached? Yes No

5. Name and address to whom correspondence concerning document should be mailed:

Name: Richard L. Byrne

Internal Address: The Webb Law Firm

Street Address: One Gateway Center
420 Ft. Duquesne Blvd., Ste 1200

City: Pittsburgh

State: PA Zip: 15222

Phone Number: 412-471-8815

Fax Number: 412-945-5933

Email Address: assignments@webblaw.com

6.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and patents involved: 1

7. Total fee (37 CFR 1.21(h) & 3.41) \$ 40

- Authorized to be charged by credit card
- Authorized to be charged to deposit account
- Enclosed
- None required (government interest not affecting ti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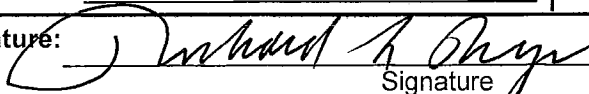
8. Payment Information

a. Credit Card Last 4 Numbers 4775
Expiration Date 05/2015

b. Deposit Account Number 23-0650

Authorized User Name _____

9. Signature:


Signature

November 26, 2012

Date

Richard L. Byrne, Registration No. 28,498

Name of Person Signing

Total number of pages including cover sheet, attachments, and documents:

39

Documents to be recorded (including cover sheet) should be faxed to (571) 273-0140, or mailed to:
Mail Stop Assignment Recordation Services, Director of the USPTO, P.O.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Doc. No.

English Translation

Certificate Copy of Commercial Register (Including Cancelled Particulars) [for submission]

Register No.	193415	
Registration No.	110111-1934151	
Company Name	GOODSDAQ Co., Ltd.	Changed on Registered on
	INTERPARK GOODSDAQ Co., Ltd.	Changed on May 3, 2000 Registered on May 6, 2000
	INTERPARK GMARKET CORPORATION	Changed on March 31, 2004 Registered on April 10, 2004
	GMARKET INC.	Changed on June 15, 2009 Registered on June 16, 2009
	eBay Korea Co., Ltd.	Changed on August 31, 2011 Registered on August 31, 2011
Head Office	14th Floor, Rodameo Tower, 679 4, Yeoksam-dong, Gangnam-gu, Seoul	Changed on Registered on
	4th Floor, Seyo Bldg., 161 8, Samseong-dong, Gangnam-gu, Seoul	Changed on March 31, 2002 Registered on April 8, 2002
	6th Floor, Hoseong Bldg. Singwan(New Bldg.), 44 2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Changed on March 22, 2003 Registered on March 27, 2003
	6th Floor, Nam Seoul Bldg., 1304 3, Seocho-dong, Seocho-gu, Seoul	Changed on April 3, 2004 Registered on April 10, 2004
	6th-8th Floor, LG Fire & Marine Insurance Co. Bldg., 649 11, Yeoksam-dong, Gangnam-gu, Seoul	Changed on February 25, 2006 Registered on March 2, 2006
	Gangnam Finance Center, 737, Yeoksam-dong, Gangnam-gu, Seoul	Changed on January 4, 2010 Registered on January 7, 2010
	Method of giving Public Notice	To be published in a daily newspaper "The Korean Economic Daily" which is issued in Seoul
To be published in a daily newspaper "Maeil Business Newspaper" which is issued in Seoul		Changed on May 3, 2000 Registered on May 6, 2000
Par Value Per Share	5,000 Won	Changed on Registered on
	100 Won	Changed on December 2, 2005 Registered on January 9, 2006

Issuance No.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Issue Date: September 1, 2011

PATENT
REEL: 029347 FRAME: 0552

English Translation

Total Number of Stocks to be Issued	960,000 Stocks	Changed on
		Registered on
	4,000,000 Stocks	Changed on May 3, 2000
		Registered on May 6, 2000
	20,000,000 Stocks	Changed on November 24, 2004
		Registered on December 7, 2004
	200,000,000 Stocks	Changed on December 2, 2005
		Registered on December 12, 2005

---Translation omitted in the middle part---

Purposes	
1. Software advice, development and supply	
2. Data processing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Added on December 22, 2004 Registered on December 30, 2004>
3. Providing of database and on-line information	
	<Added on December 22, 2004 Registered on December 30, 2004>
4. Special categor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by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5.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by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6. Wholesale & retail and export & import by electronic Commerce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7. Financial business by electronic Commerce	
	<Changed on March 16, 2011 Registered on March 25, 2011>
8. Internet auction and brokerage of commodity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9. Mail-order selling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0. Internet advertising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1. Publication of Internet electronic gift certificate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2. Payment and physical distribution services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3. Internet contents development and supply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4. Network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upply of payments systems such as physical distribution and sale on credit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5. Brokerage of Internet travel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6. Internet supplementary service development and supply	

English Translation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7. Computer system engineering and advice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8. Other computer operation management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19. Sale of medical appliance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0. Escrow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1. Payment gateway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2. Publication and management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product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3. Training, training business and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relating to the above-mentioned business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4. Buying & selling and renting of facility, real estate relating to the above-mentioned business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5. Facilit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above-mentioned business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6. Overseas operations relating to the above-mentioned business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27. All things appendant to the above-mentioned business		
	<Added on March 18, 2008	Registered on March 20, 2008>

---Translation omitted in the middle part---

English Translation

Establishment Date of company: April 7, 2000

Reasons and Date for Opening Registration Record Copy

Establishment

Registered on April 7, 2000

Received: 800 won for the official fee

---- blank ----

The Competent Commercial Registry Office: Commercial Registration Offic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Issuing Commercial Registry Office for this Register: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ral Management Office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is is a Certified Copy of a Commercial Register [Managers (agents), and branch offices for which any request is not made, are omitted from the register].

September 1,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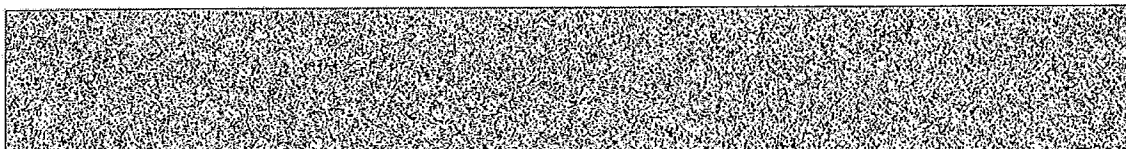
Computer Operation Executive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ral Management Office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eale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제출용]

등기번호	193415		
등록번호	110111-1934151		
상 호	주식회사 구스닥		변경 등기
	주식회사 인터파크구스닥	2000.05.03	변경
		2000.05.06	등기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	2004.03.31	변경
		2004.04.10	등기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	2009.06.15	변경
		2009.06.16	등기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eBay Korea Co., Ltd.)	2011.08.31	변경
		2011.08.31	등기
본 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4 로담코타워 14층		변경 등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8 세요빌딩 4층	2002.03.31	변경
		2002.04.08	등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4 호성빌딩 신관 6층	2003.03.22	변경
		2003.03.27	등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4-3 남서울빌딩 6층	2004.04.03	변경
		2004.04.10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지화재해상보험빌딩 6-8층	2006.02.25	변경
		2006.03.02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010.01.04	변경
		2010.01.07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한국경제에 게재한다		변경 등기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00.05.03	변경
		2000.05.06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변경 등기
	금 100 원	2005.12.02	변경
		2006.01.09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960,000 주		변경 등기
	4,000,000 주	2000.05.03	변경
		2000.05.06	등기
	20,000,000 주	2004.11.24	변경
		2004.12.07	등기
	200,000,000 주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000220015111403990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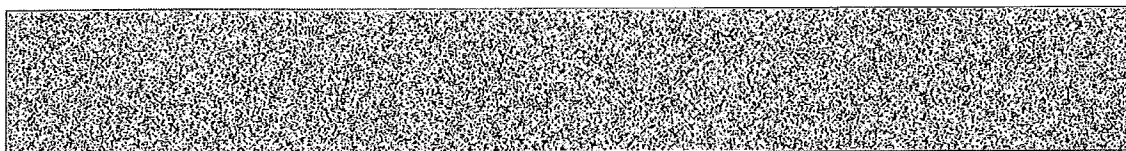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40,000 주	금 1,200,000,000 원	변경
보통주식	240,000 주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60,000 주	금 1,800,000,000 원	2000.06.13 변경
보통주식	360,000 주		2000.06.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80,000 주	금 2,400,000,000 원	2001.11.21 변경
보통주식	480,000 주		2001.11.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31,530 주	금 3,657,650,000 원	2004.12.30 변경
보통주식	480,000 주		2004.12.30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251,530 주	금 4,265,150,000 원	2005.07.15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853,030 주		2005.07.19 등기
보통주식	601,500 주	금 4,297,650,000 원	2005.08.04 변경
상환전환우선주식	251,530 주		2005.08.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59,530 주	금 4,297,650,000 원	2005.12.06 변경
보통주식	608,000 주		2006.01.09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251,530 주	금 4,297,650,000 원	2006.04.18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42,976,500 주		2006.04.19 등기
보통주식	30,400,000 주	금 4,342,650,000 원	2006.06.11 변경
상환전환우선주식	12,576,500 주		2006.06.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3,426,500 주	금 4,342,650,000 원	2006.07.06 변경
보통주식	30,850,000 주		2006.07.07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12,576,500 주	금 4,970,871,000 원	2007.04.09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43,426,500 주		2007.04.12 등기
보통주식	43,426,500 주	금 4,974,703,500 원	2007.09.03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49,506,210 주		2007.09.06 등기
보통주식	49,506,210 주	금 4,978,286,900 원	2008.03.11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49,708,710 주		2008.03.12 등기
보통주식	49,708,710 주	금 5,006,487,100 원	2008.04.08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49,747,035 주		2008.04.10 등기
보통주식	49,747,035 주	금 5,029,126,700 원	2008.07.09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49,782,869 주		2008.07.14 등기
보통주식	49,782,869 주	금 5,033,174,000 원	2008.10.08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50,064,871 주		2008.10.10 등기
보통주식	50,064,871 주	금 5,035,460,500 원	2009.01.09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50,291,267 주		2009.01.13 등기
보통주식	50,291,267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331,740 주		
보통주식	50,331,74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354,605 주		
보통주식	50,354,605 주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2/34 -



등기번호	19341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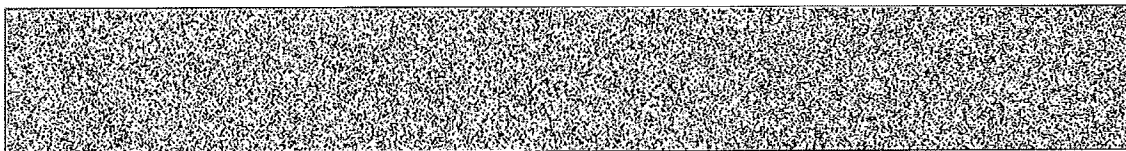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0,423,122 주	금 5,042,312,200 원	2009.04.08 변경
보통주식	50,423,122 주		2009.04.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0,423,122 주	금 5,042,312,200 원	2009.04.07 변경
보통주식	50,423,122 주		2009.04.09 등기 2009.04.22 등기 원인일자 결정
발행주식의 총수	50,874,508 주	금 5,087,450,800 원	2009.05.07 변경
보통주식	50,874,508 주		2009.05.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0,900,273 주	금 5,090,027,300 원	2009.05.29 변경
보통주식	50,900,273 주		2009.06.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1,030,795 주	금 5,103,079,500 원	2009.06.16 변경
보통주식	51,030,795 주		2009.06.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4,161,866 주	금 7,416,186,600 원	2009.06.23 변경
보통주식	74,161,866 주		2009.06.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4,164,419 주	금 7,416,441,900 원	2011.08.31 변경
보통주식	74,164,419 주		2011.08.31 등기

목 적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 베이스업			
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관리업	<2004.12.22 추가	2004.12.30	등기>
3. 컴퓨터 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사업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004.12.22 추가	2004.12.30	등기>
4.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 중 부가통신업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5.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6.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7.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와 기술개발업			
	<2001.03.30 삭제	2001.04.13	등기>
8.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1.03.30 삭제	2001.04.13	등기>
9. 상기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전사업			
	<2001.03.30 삭제	2001.04.13	등기>
10.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1.03.30 삭제	2001.04.13	등기>
11.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1.03.30 삭제	2001.04.13	등기>
7. 인터넷 경매 및 상품 중개업	<2001.03.30 추가	2001.04.1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8. 통신판매업	<2001.03.30 추가	2001.04.1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9.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와 기술개발업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3/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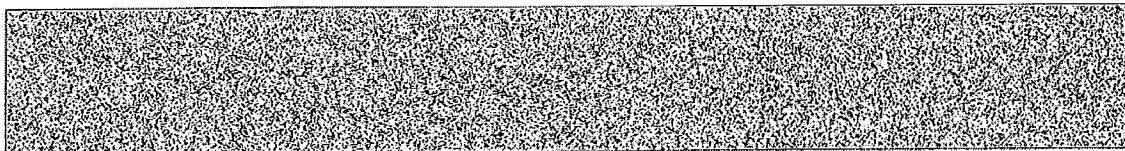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	--------

	<2001.03.30 변경	2001.04.13	등기>
	<2003.03.14 삭제	2003.03.27	등기>
10.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1.03.30 변경	2001.04.13	등기>
	<2003.03.14 삭제	2003.03.27	등기>
11. 상기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전사업			
	<2001.03.30 변경	2001.04.13	등기>
	<2003.03.14 삭제	2003.03.27	등기>
12.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1.03.30 변경	2001.04.13	등기>
	<2003.03.14 삭제	2003.03.27	등기>
13.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1.03.30 변경	2001.04.13	등기>
	<2003.03.14 삭제	2003.03.27	등기>
9. 인터넷광고업	<2003.03.14 추가	2003.03.27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0. 인터넷 전자상품권 발행업	<2003.03.14 추가	2003.03.27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1.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03.03.14 추가	2003.03.27	등기>
11. 결제관련, 물류관련 서비스 사업	<2005.12.02 추가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2. 물류, 신용판매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제공업			
	<2003.03.14 추가	2003.03.27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3.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와 기술개발업			
	<2003.03.14 변경	2003.03.27	등기>
13. 인터넷 여행 중개업	<2004.03.31 추가	2004.04.1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4.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3.03.14 변경	2003.03.27	등기>
14.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2004.03.31 추가	2004.04.1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5.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3.03.14 변경	2003.03.27	등기>
15.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와 기술개발업			
	<2004.03.31 변경	2004.04.10	등기>
15.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004.12.22 추가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6.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3.03.14 변경	2003.03.27	등기>
16.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4.03.31 변경	2004.04.10	등기>
16.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2004.12.22 추가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7.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3.03.14 변경	2003.03.27	등기>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E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4/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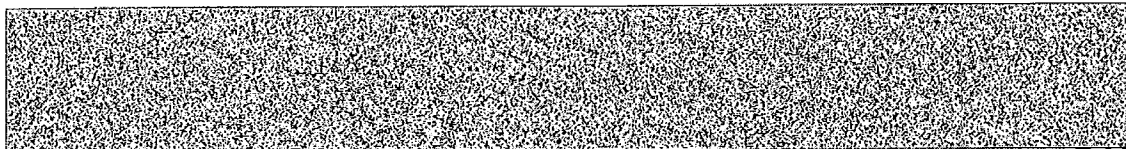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17.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4.03.31	변경	2004.04.10 등기>
17.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의 기술개발업	<2004.12.22	변경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8.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4.03.31	변경	2004.04.10 등기>
18.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4.12.22	변경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9.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4.03.31	변경	2004.04.10 등기>
19.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4.12.22	변경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20.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4.12.22	변경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21.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4.12.22	변경	2004.12.30 등기>
	<2005.12.02	삭제	2005.12.12 등기>
12.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3. 물류, 신용판매 등 결제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제공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4. 인터넷 여행 중개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5.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지문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7.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8.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의 기술개발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6.03.28	삭제	2006.04.05 등기>
19.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6.03.28	삭제	2006.04.05 등기>
20.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6.03.28	삭제	2006.04.05 등기>
21.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2006.03.28	삭제	2006.04.05 등기>
22.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5.12.02	변경	2005.12.12 등기>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5/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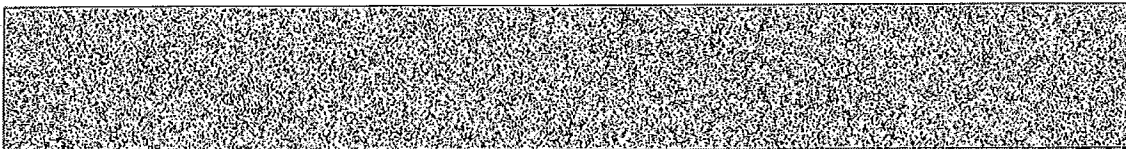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	--------

	<2006.03.28	삭제	2006.04.05	등기>
18. 의료용구판매업	<2006.03.28	추가	2006.04.05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19. 결제대금에차입	<2006.03.28	추가	2006.04.05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0.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의 기술개발업	<2006.03.28	변경	2006.04.05	등기>
20.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007.03.29	추가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1.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6.03.28	변경	2006.04.05	등기>
2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07.03.29	추가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2.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6.03.28	변경	2006.04.05	등기>
22.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의 기술개발업	<2007.03.29	변경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6.03.28	변경	2006.04.05	등기>
23.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7.03.29	변경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4.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6.03.28	변경	2006.04.05	등기>
24.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7.03.29	변경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5.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7.03.29	변경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26.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7.03.29	변경	2007.04.23	등기>
	<2008.03.18	삭제	2008.03.20	등기>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별정통신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5.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6.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7.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7.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2011.03.16	변경	2011.03.25	등기>
8. 인터넷 경매 및 상품 중개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9. 통신판매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0. 인터넷 광고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1. 인터넷 전자상품권 발행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2. 결제관련, 물류관련 서비스 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6/34 -



등기번호	19341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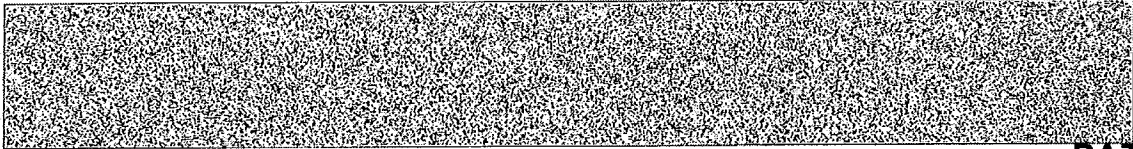
13.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4. 물류, 신용판매 등 결제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제공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5. 인터넷 여행 중개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6.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7.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8.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19. 의료용구판매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0. 결제대금예치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3.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사업 및 연구와 기술개발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4. 상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5.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6.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27.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2008.03.18 추가	2008.03.20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상규 661019-1*****			
2000년 04월 07일	취임	2000년 04월 0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사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취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중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규 661019-1*****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이사 이기형 630125-1*****			
2000년 04월 07일	취임	2000년 04월 0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사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취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중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기형 630125-1*****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이사 김영덕 680918-1*****			
2000년 04월 07일	취임	2000년 04월 0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사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취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4년 12월 22일	해임	2004년 12월 30일	등기
대표이사 이상규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504-10 동보3차(아) 101-109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E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7/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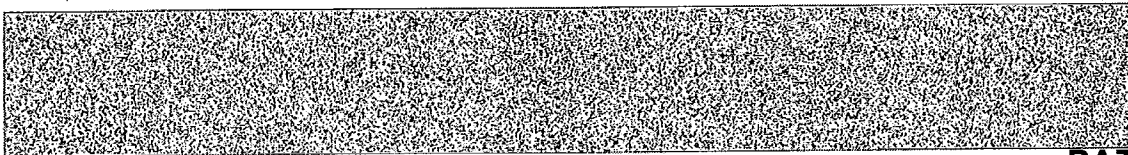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2000년 04월 07일 취입	2000년 04월 07일 등기
2000년 04월 07일 취입	2000년 04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이상규 661019-1*****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504-10 동보3차(아) 101-109	
2001년 06월 11일 사입	2001년 06월 13일 등기
감사 노병조 650410-1*****	
2000년 04월 07일 취입	2000년 04월 07일 등기
2003년 03월 14일 퇴입	2003년 03월 27일 등기
이사 구영배 660223-1*****	
2001년 04월 01일 취입	2001년 04월 13일 등기
2004년 03월 31일 중입	2004년 04월 10일 등기
2007년 03월 31일 중입	2007년 04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구영배 660223-1*****	
2010년 03월 31일 중입	2010년 04월 08일 등기
2010년 06월 10일 사입	2010년 06월 10일 등기
대표이사 이기형 630125-1*****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192 정든마을 809-304	
2001년 06월 11일 취입	2001년 06월 13일 등기
2001년 10월 01일 사입	2001년 10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구영배 660223-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3 공작부영아파트 310-1203	
2001년 10월 01일 취입	2001년 10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구영배 660223-1*****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3 낙성대 현대 홈타운 302-121	
2002년 02월 28일 주소변경	2002년 03월 04일 등기
2004년 03월 31일 중입	2004년 04월 10일 등기
대표이사 구영배 6602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7-30 방배3차-이 편천세상 102-1001	
2006년 07월 24일 주소변경	2006년 07월 31일 등기
2007년 03월 31일 중입	2007년 04월 27일 등기
대표이사 구영배 6602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3-1 동산빌라 1-6	
2008년 02월 22일 주소변경	2008년 02월 26일 등기
대표이사 구영배 6602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1 반포자이아파트 126-301	
2009년 02월 02일 주소변경	2009년 02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구영배 6602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포자이아파트 126-301	
2009년 05월 06일 지번정정	2009년 06월 29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중입	2010년 04월 08일 등기
2010년 06월 10일 사입	2010년 06월 10일 등기
감사 허광원 641113-1*****	
2003년 03월 14일 취입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5년 12월 02일 사입	2005년 12월 12일 등기
이사 미합중국인 존에드워드필번 1962. 1. 23.생	
2004년 12월 22일 취입	2004년 12월 30일 등기
2005년 12월 02일 사입	2005년 12월 12일 등기
이사 미합중국인 미수드엔데카비 1954. 9. 20.생	
2005년 12월 02일 취입	2005년 12월 12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사입	2006년 04월 05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8/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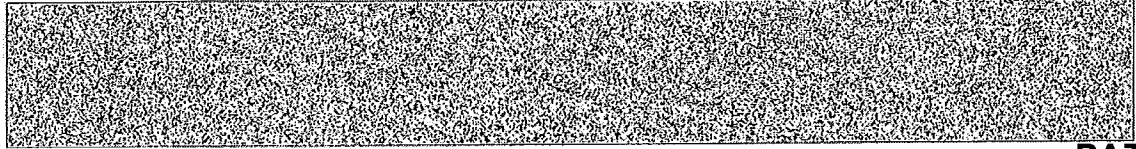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5월 16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사외이사 미합중국인 마수드엔테카비 1954. 9. 20. 생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이사 김학균 630321-1*****	
2005년 12월 02일 취임	2005년 12월 12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사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27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사외이사 김학균 630321-1*****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이사 함준호 640211-1*****	
2005년 12월 02일 취임	2005년 12월 12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사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27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사외이사 함준호 640211-1*****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이사 미합중국인 존에드워드밀번 1962. 1. 23. 생	
2005년 12월 02일 취임	2005년 12월 12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사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5월 16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사외이사 미합중국인 존에드워드밀번 1962. 1. 23. 생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감사위원 미합중국인 마수드엔테카비 1954. 9. 20. 생	
2005년 12월 02일 취임	2005년 12월 12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사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5월 16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감사위원 김학균 630321-1*****	
2005년 12월 02일 취임	2005년 12월 12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9/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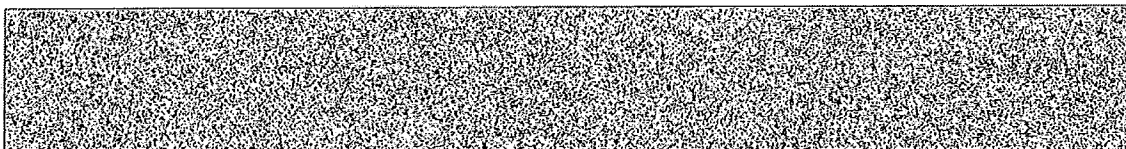


등기번호	193415
2006년 03월 28일 사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27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감사위원 함준호 640211-1*****	
2005년 12월 02일 취임	2005년 12월 12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사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6년 03월 28일 취임	2006년 04월 0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27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이사 미합중국인 그렉말버 1969.12.22.생	
2006년 12월 30일 취임	2007년 01월 15일 등기
2009년 03월 31일 사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이사 김석현 630425-1*****	
2006년 12월 30일 취임	2007년 01월 15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사임	2007년 04월 27일 등기
이사 김석현 630425-1*****	
2007년 03월 29일 취임	2007년 04월 27일 등기
2007년 07월 05일 사임	2007년 09월 19일 등기
이사 김지훈 670824-1*****	
2007년 07월 09일 취임	2007년 09월 19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사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2008년 03월 18일 취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사외이사 김지훈 670824-1*****	
2009년 03월 31일 중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로즈짜오 1965.05.29.생	
2009년 03월 31일 취임	2009년 04월 13일 등기
2009년 06월 15일 사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사내이사 박주만 671008-1*****	
2009년 06월 15일 취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재현 640405-1*****	
2009년 06월 15일 취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미합중국인 존데이비드폴러 1961.09.23.생	
2009년 06월 15일 취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스위스국인 니콜라스피터슈타예프 1957.09.15.생	
2009년 06월 15일 취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감사 미합중국인 문제임스정환 1966.02.06.생	
2009년 06월 15일 취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대표이사 박주만 671008-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타워팰리스아파트 이-1307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0/34 -



등기번호	193415
------	--------

2009년 06월 15일 취임 2009년 06월 1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증권에탁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2001년 04월 27일 설치 2001년 05월 10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에탁결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9년 02월 04일 변경 2009년 02월 16일 등기

(1) 제1종 우선주식의 명칭 및 순위

1.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우선주식은 "참가적 의결권부 전환 상환 제1종 우선주식"으로 한다.

2. 우선주식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청산, 해산 혹은 정리시 경우, (i) 주당 액면금 5,000원인 회사의 보통주식(이하 본 조에서 "보통주식"을 주식분할, 주식배당, 주식병합, 재분류, 자본산입, 흡수합병, 신설합병, 주식교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본재구성과 관련하여 보통주식에 대하여 혹은 보통주식을 대체하여 발행된 증권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또는 회사가 이 정관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1주를 최초로 발행하는 날(이하 "발행일"이라 함) 이후 이사회가 정한 다른 종류의 주식자본(이하 본 조 제9항에서 정의됨),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 혹은 기타 자본연계 증권에 대하여, 그 각각의 발행조건에 명시적으로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청산, 해산이나 정리시 제1종 우선주식보다 권리에 있어 우선순위 혹은 동순위라고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함께 이러한 증권을 통칭하여 "후순위 증권"이라 함), 우선권을 가지며, (ii) 발행일 이후 이사회가 정하여 회사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주식자본이나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 혹은 기타 자본연계증권과는, 이들의 발행조건이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청산, 해산 또는 정리시 권리에 관하여 우선주식과 동등순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 증권"이라 통칭),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2) 배당

1.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주주들은 법률상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재산에서 제1종 우선주식 1주당 액면가액의 0.001%의 비율로, 동 주식에 관한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조정을 거쳐 누적되지 않는 배당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배당금은 배당금을 선언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일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각 배당금은 (i)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연간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에 관한 회계연도 말 현재, 또는 (ii) 이사회에서 승인된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6월 30일 혹은 정관에서 정한 다른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식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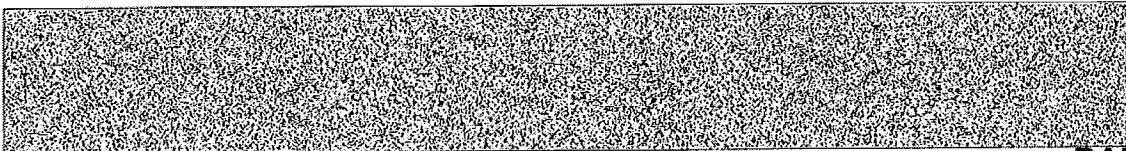
2. 배당금 재산을 목적상 회계연도 중에 발행된 신규 우선주식은 직전 회계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금발생기간 전기간에 관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배당금발생기간"이란 정관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년을 말한다.

3.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하여는, 바로 다음 문장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발행 우선주식 전부에 관하여 배당금이 동시에 선언되고 전액 지급되거나 또는 그 지급에 충분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1/34 -



등기번호

193415

한 금액을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적립해 두지 않은 이상, (A) 동순위 증권에 관하여 배당금을 선언하거나 지급하거나 또는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할 수 없으며, (B) 동순위 증권에 관하여 기타 분배를 선언하거나, 분배를 시행하거나 혹은 분배금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할 수 없으며, (C) 회사, 또는 회사가 이사회 기타 지배기구 선출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주식(혹은 그와 유사한 의결권)의 5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단체("자회사")는, (후순위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교환하는 경우 이외에) 유상으로 동순위 증권을 매입, 상환, 취득하거나 또는 소각할 수 없으며, (D) 회사나 자회사는 동순위 증권의 유상 매입, 상환 혹은 기타 인수나 소각을 위한 감채지급이나 유사지급을 위해 금전을 지출하거나, 별도로 금액을 적립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회사가 우선주식에 관하여 발생한 배당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동 지급액은 우선주식의 각 보유자가 보유한 우선주식에 관한 마지막 배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주식 보유자들 간에 비례 배분한다. 위의 같이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위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지 못할 경우, 다른 종류나 시리즈의 동순위 증권에 관하여 선언된 배당금은 모두 각 금액에 비례하여 우선주식에 관한 누적된 마지막 배당금 및 동순위 증권에 관한 누적된 마지막 배당금으로써 사용된다.

1. 발행주식의 내용

(1) 제1종 우선주식의 명칭 및 순위

1.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우선주식은 "참가적 의결권부 전환 제1종 우선주식"으로 한다.

2. 우선주식은 자발적 또는 비지발적 청산, 해산 혹은 정리의 경우, (i) 주당 액면금 100 원인 회사의 보통주식(이하 본 제8조에서 "보통주식"을 주식분할, 주식배당, 주식병합, 재분류, 자본산입, 흡수합병, 신설합병, 주식교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본재구성과 관련하여 보통주식에 대하여 혹은 보통주식을 대체하여 발행된 증권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또는 회사가 이 정관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1주를 최후로 발행하는 날(이하 "발행일"이라 함) 이후 이사회가 정한 다른 종류의 주식자본(아래 본조 제8항에서 정의됨),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 혹은 기타 자본연계 증권에 대하여, 그 각각의 발행조건에 명시적으로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청산, 해산이나 정리시 제1종 우선주식보다 권리에 있어 우선순위 혹은 동순위라고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함께 이러한 증권을 통칭하여 "후순위 증권"이라 함), 우선권을 가지며, (ii) 발행일 이후 이사회가 정하여 회사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주식자본이나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 혹은 기타 자본연계증권과는, 이들의 발행조건이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청산, 해산 또는 정리시 권리에 관하여 우선주식과 동등순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 증권"이라 통칭),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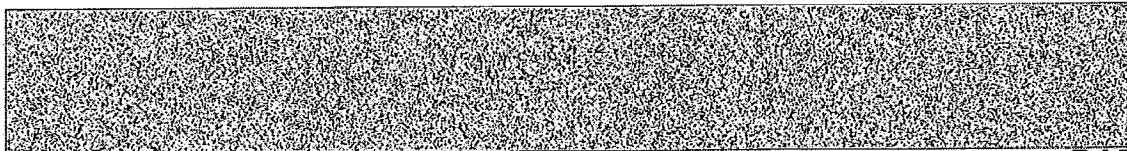
(2) 배당

1.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주주들은 법률상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재산에서 제1종 우선주식 1주당 액면가액의 0.001%의 비율로, 동 주식에 관한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조정을 거쳐 누적되지 않는 배당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배당금은 배당금을 선언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일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각 배당금은 (i)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연간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에 관한 회계연도 말 현재, 또는 (ii) 이사회에서 승인된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6월 30일 혹은 정관에서 정한 다른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식명부에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2/34 -



등기번호

193415

등재되어 있는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배당금 계산을 목적상 회계연도 중에 발행된 신규 우선주식은 직전 회계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금발생기간 전기간에 관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배당금발생기간"이란 정관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년을 말한다.
3.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하여는, 바로 다음 문장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발행 우선주식 전부에 관하여 배당금이 동시에 선언되고 전액 지급되거나 또는 그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별도 적립해 두지 않은 이상, (A) 동순위 증권에 관하여 배당금을 선언하거나 지급하거나 또는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할 수 없으며, (B) 동순위 증권에 관하여 기타 분배를 선언하거나, 분배를 시행하거나 혹은 분배금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할 수 없으며, (C) 회사, 또는 회사가 이사 기타 지배기구 선출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주식(혹은 그의 유사한 의결권)의 5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단체("자회사")는, (후순위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교환하는 경우 이외에) 유상으로 동순위 증권을 매입, 상환, 취득하거나 또는 소각할 수 없으며, (D) 회사나 자회사는 동순위 증권의 유상 매입, 상환 혹은 기타 인수나 소각을 위한 감채기금이나 유사기금을 위해 금전을 지출하거나, 별도 금액을 적립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회사가 우선주식에 관하여 발생한 배당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동 지급액은 우선주식의 각 보유자가 보유한 우선주식에 관한 미지급 배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주식 보유자들 간에 비례 배분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위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지 못할 경우, 다른 종류나 시리즈의 동순위 증권에 관하여 선언된 배당금은 모두 각 금액에 비례하여 우선주식에 관한 누적된 미지급 배당금 및 동순위 증권에 관한 누적된 미지급 배당금으로써 사용된다.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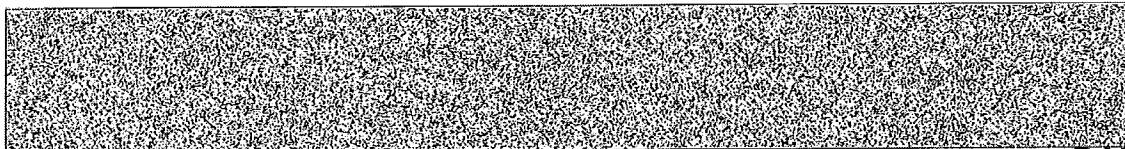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4.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해 선언된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선언된 배당금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두지 않는 한, (A) (순수하게 후순위 증권에 관해서만 지급할 배당금은 제외하고) 후순위 증권에 관하여 배당금을 선언하거나 지급하거나 또는 그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적립할 수 없고, (B) 후순위 증권에 관하여 기타 분배 내지 지급이나, 그 지급을 위한 별도의 금액 적립은 없으며, (C) 회사나 그 자회사가 후순위 증권을 유상으로 매입, 상환 혹은 달리 이를 인수 내지 소각하지 아니하며(기타 후순위 증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외), (D) 회사나 그 자회사의 후순위 증권의 유상 매입, 상환이나 기타 인수나 소각을 위한 감채기금이나 기타 유사기금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별도로 이를 적립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5. 또한, 회사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가 기발행 보통주식에 관해 지급할 배당금을 선언할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주식비율에 따라(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기준)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주당 배당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선언된 미지급 배당금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청산, 해산 혹은 정리의 경우 우선주식 주주들에게 먼저 지급하며, 그 후 보통주식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6. 발행일 이후,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분배하거나 또는 무상주식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주주들은 그의 같은 주식을 각각의 주식비율(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기준)에 따라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3/34 -



등기번호

193415

지급받을 수 있다.

(3)잔여재산 우선배분

1.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회사의 청산, 해산 내지 정리시("청산사태"), 후순위 증권 보유 자들에 대한 분배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합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회사의 잔여재산으로부터 우선주식 각 주에 관하여 (A) 우선주식의 원래 발행 가액("원발행가액")인 31,962.33원과 (B) 우선주식에 관한 미지급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우선주식에 관한 주식배당, 주식환합, 주식분할이나 그의 유사한 경우에 의한 조정을 반영하여야 한다("잔여재산 우선배분").
2. 청산사태에서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회사의 잔여 자산이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잔여재산 우선배분 금액전액을 지급하고 모든 동순위증권 보유자들에게 대한 잔여재산-우선배분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들과 기타 동순위 증권 보유자들은 이들이 보유한 증권에 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전액 지급 받는다면 잔여재산 분배시 이들이 보유한 증권(우선주식과 동순위증권)에 관해 각각 지급 받게 되었을 금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3. 본조 제(3).1항에 정한 분배 완료시, 주주들에게 분배 가능한 회사의 추가자산은 우선주식 보유자들과 후순위 증권 보유자들 간에 각자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우선주식의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를 기준으로 분배된다.

1. 발행주식의 내용

4.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해 선언된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선언된 배당금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두지 않는 한, (A) (순수하게 후순위 증권에 관해서만 지급할 배당금은 제외하고) 후순위 증권에 관하여 배당금을 선언하거나 지급하거나 또는 그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적립할 수 없고, (B) 후순위 증권에 관하여 기타 분배 내지 지급이나, 그 지급을 위한 별도의 금액 적립은 없으며, (C) 회사나 그 자회사나 후순위 증권을 유상으로 매입, 상환 혹은 달리 이를 인수 내지 소각하지 아니하며(기타 후순위 증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외), (D) 회사나 그 자회사의 후순위 증권의 유상 매입, 상환이나 기타 인수를 위한 감채지급이나 기타 유사지급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별도로 이를 적립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5. 또한, 회사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가 기발행 보통주식에 관해 지급할 배당금을 선언할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주식비율에 따라(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기준)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주당 배당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선언된 미지급 배당금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청산, 해산 혹은 정리의 경우 우선주식 주주들에게 먼저 지급하며, 그 후 보통주식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6. 발행일 이후,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분배하거나 또는 무상주식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주주들은 그의 같은 주식을 각각의 주식비율(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단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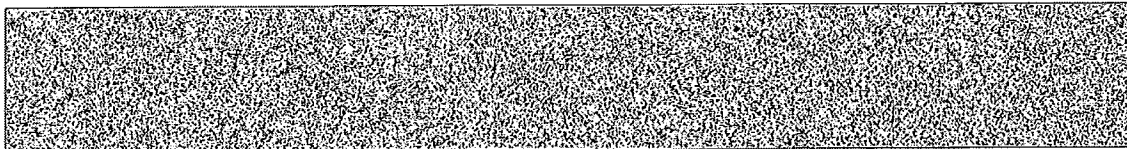
(3)잔여재산 우선배분

1.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회사의 청산, 해산 내지 정리시("청산사태"), 후순위 증권 보유 자들에 대한 분배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합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회사의 잔여재산으로부터 우선주식 각 주에 관하여 (A) 우선주식의 원래 발행 가액("원발행가액")인 639.2466원과 (B) 우선주식에 관한 미지급 배당금을 합산한 금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4/34 -



등기번호

193415

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우선주식에 관한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분할이나 그의 유사한 경우에 의한 조정을 반영하여야 한다("잔여재산 우선배분").

- 2. 청산사태에서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회사의 잔여 재산이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잔여재산 우선배분 금액전액을 지급하고 모든 동순위증권 보유자들에게 대한 잔여재산 우선배분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들과 기타 동순위 증권 보유자들은 이들이 보유한 증권에 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전액 지급 받는다면 잔여재산 분배시 이들이 보유한 증권(우선주식과 동순위증권)에 관해 각각 지급 받게 되었을 금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 3. 본조 제(3).1항에 정한 분배 완료시, 주주들에게 분배 가능한 회사의 추가자산은 우선주식 보유자들과 후순위 증권 보유자들 간에 각자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우선주식의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를 기준으로 분배된다.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 4. 제1종 우선주식을 66과 2/3%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청산사태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거래 혹은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의 전부 내지 실질적인 전부가 매각 또는 이전되는 경우("자산매각"), 자산매각에 관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하고 그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할 모든 대가는, 회사의 기타 이용가능 자산과 함께, 매수인이 우선주식과 보통주식 보유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회사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 보유자들에게 본조 제(3).1항부터 제(3).3항에서 정한 우선권과 특권에 따라 마치 그러한 거래를 해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러한 자산매각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우선권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환 자금을 이용하여)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지급한다. 추가로, 회사는 본조 제(3).4항에 규정된 사항이 그 의도한 바대로 실행될 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잔여재산 우선배분과 우선권 조항이 의도한 바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우선주식의 상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가능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매각 실행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자산매각의 조건 등을 기재한 서면통지("자산매각통지")와 기타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회사, 인수인, 인수 회사 또는 기타 인수단체가 그 보유자들에게 분배할 현금, 재산, 권리 또는 증권이다. 본조 제(3).4항에 의하여 기발행 우선주식 중 66과 2/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내릴 결정은 자산매각통지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지로서 알린다. 기발행 우선주식 중 66과 2/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결정시, 우선주식 주주들 전부가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결정은 우선주식 주주에 구속력을 갖는다. 자산매각 조건이 대가의 액수나 성질의 변경을 포함하여 자산매각통지일 이후 증대하게 변경될 경우, 회사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그러한 변경 조건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즉시 제공한다.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그러한 변경된 통지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이전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회사가 자산매각을 계획할 경우, 회사는 자산매각 관련 계약에서 잔여재산 우선배분과 우선권에 따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배분과 우선권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5/34 -



등기번호

193415

본조 제(3).4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제(3).4항이 충족될 때까지 거래의 실행을 연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거래를 취소하며,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의 권리, 우선권과 특권은 1차 자산매각통지일 직전에 존재했던 권리, 우선권 및 특권으로 복구하여 그와 동일하게 된다.

5. 회사의 자산이 본조 (3)항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현금 이외의 것으로 분배되어야 할 경우, 이사회는 즉각 제3의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 보유자들에게 분배될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회사는 평가기관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 보유자 각각에게 그를 서면통지로서 송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분배될 증권은 다음과 같이 그 가치를 평가한다:

가. 이하 본조 제(3).5.나항에 언급된 투자확인서 내지 기타 자유로운 거래가능성에 대한 유사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증권의 경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i) 한국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에서 거래될 경우, 가격은 청산사태일에서 서울영업일 3일 전에 종료되는 30일 동안의 기간에 걸쳐 한국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증가 평균으로 간주된다.

(ii) 일일 평균 거래량당 최소 500주의 장외거래로 거래된 경우, 가격은 청산사태 일에서 서울영업일 3일 전에 종료되는 30일 동안의 기간에 걸친 종료 호가 혹은 매도가 (어느 것이든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함)의 평균으로 간주된다.

(iii) 활성화된 공개시장이 없을 경우, 가격은 회사의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의 과반수 보유자들 간에 상호 결정되는 바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단, 회사의 기발행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의 과반수의 보유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은행의 독립적인 평가에 의한다. 투자은행은 회사가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기발행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 과반수의 보유자들이 동의하는 곳으로 한다.

나. 투자확인서 또는 기타 자유로운 거래가능성에 대한 규제(특수관계인 혹은 과거에 특수관계인이었다는 주주 신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규제는 제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가격은 위 가.(i), (ii) 또는 (iii)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을 이사회가 성실히 결정한 적절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4)의결권:

1. 기발행 우선주식 보유자 각각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혹은 임시주주총회(회의를 대신한 주주들의 서면결의의 경우를 포함함)에서 회사 주주들의 심의 및 결의를 위해 제출된 모든 안건에 관하여 우선주식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진다. 법에 규정된 경우 혹은 이 조건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보통주식 보유자들과 함께 단일한 종류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법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치를 발효하거나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우선주식의 2/3 이상이며 동시에 기발행 우선주식의 1/3 이상을 포함하는 우선주식의 보유자들의 찬성결의 또는 서면동의를 필요하다:

가.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식의 발행, 주식병합, 주식소각 혹은 합병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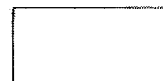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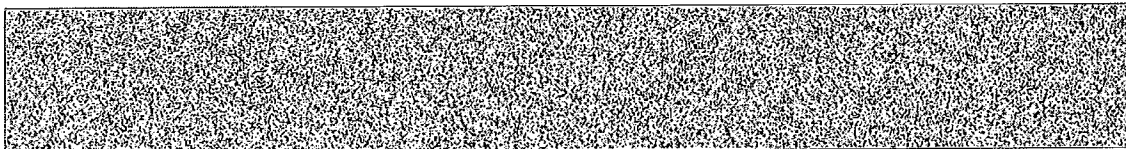
나.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분할, 상법 제360조의2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 15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다.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우선주식의 권리, 우선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6/34 -



등기번호

193415

권, 특권이나 권한을 창설, 변경, 개정 혹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라. 수권 또는 발행된 우선주식 총수의 증감 또는
파. 상기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나 계약.

(5) 전환권

1. 전환권과 전환비용

가. 전환권

(i)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본조 제(5)항에 정한 전환권("전환권")을 갖는다. 본조 제(5)항을 조건으로,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한 전환권은 발행일부터 발행일의 20주년 일까지 기간 중 언제든지 그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고, 완납되어 추가불입의 의무가 없는 보통주식("전환주식")으로 전환된다.

(ii) 전환을 위해 제출된 우선주식은 모두 더 이상 기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주식에 관한 배당권, 통지를 받을 권리 및 의결권 등 모든 권리는, 그 보유자들이 전환주식을 받을 권리와 (해당사항이 있다면) 전환주식 단주에 대한 현금 크리크 제(5)항에 의해 우선주식 전환에 따라 교부되어야 할 기타 증권, 재산이나 현금을 받을 권리를 제외하고, 전환일에 즉각 종료된다. 전환된 우선주식은 사라지고 우선주식으로 재발행되지 아니하며, 회사는 그에 따라 수권 우선주식의 수를 감하는데 필요한 적절할 조치를 취한다.

1. 발행주식의 내용

(i)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가격은 청산사태일에서 서울영업일 3일 전에 종료되는 30일 동안의 기간에 걸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증가 평균으로 간주된다.

(ii) 일일 평균 거래량량 최소 500주의 장의거래로 거래된 경우, 가격은 청산사태 일에서 서울영업일 3일 전에 종료되는 30일 동안의 기간에 걸친 종료 호가 혹은 매도가 (어는 것이든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함)의 평균으로 간주된다.

(iii) 활성화된 공개시장이 없을 경우, 가격은 회사의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의 과반수 보유자들 간에 상호 결정되는 바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단, 회사의 기발행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의 과반수의 보유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은행의 독립적인 평가에 의한다. 투자은행은 회사가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기발행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 과반수의 보유자들이 동의하는 곳으로 한다.

나. 투자확인서 또는 기타 자유로운 거래가능성에 대한 규제(특수관계인 혹은 과거에 특수관계인이었다는 주주 신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규제는 제외)의 대상이 되는 증권 외 가격은 위 가.(i), (ii) 또는 (iii)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을 이사회가 성실히 결정한 적절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4) 의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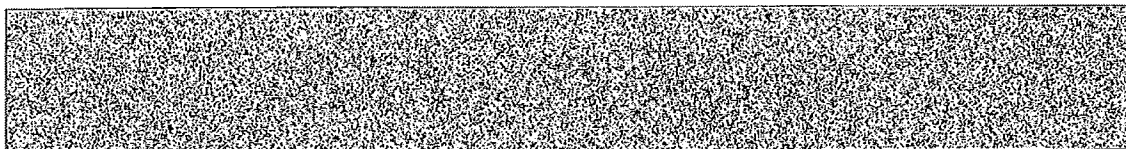
1. 기발행 우선주식 보유자 각각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혹은 임시주주총회(회의를 대신한 주주들의 서면결의의 경우를 포함함)에서 회사 주주들의 심의 및 결의를 위해 제출된 모든 안건에 관하여 우선주식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진다. 법에 규정한 경우 혹은 이 조건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보통주식 보유자들과 함께 단일한 종류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법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치를 발효하거나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우선주식의 2/3 이상이며 동시에 기발행 우선주식의 1/3 이상을 표창하는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7/34 -



등기번호

193415

우선주식의 보유자들의 찬성결의 또는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가.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식의 발행, 주식병합, 주식소각 혹은 합병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결정
- 나.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분할, 상법 제360조의2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 15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이전
- 다.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우선주식의 권리, 우선권, 특권이나 권한을 창설, 변경, 개정 혹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 라. 수권 또는 발행된 우선주식 총수의 증감 또는
- 마. 상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나 계약.

(5) 전환권.

1. 전환권과 전환비용.

가. 전환권.

- (i)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본조 제(5)항에 정한 전환권("전환권")을 갖는다. 본조 제(5)항을 조건으로,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한 전환권은 발행일부터 발행일의 20주년 일까지 기간 중 언제든지 그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고, 원납되어 추가불입의 의무가 없는 보통주식("전환주식")으로 전환된다.
- (ii) 전환을 위해 제출된 우선주식은 모두 더 이상 기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주식에 관한 배당권, 통지를 받을 권리 및 의결권 등 모든 권리는, 그 보유자들이 전환주식을 받을 권리의 (해당사항이 있다면) 전환주식 단주에 대한 현금 그라코 제(5)항에 의해 우선주식 전환에 따라 교부되어야 할 기타 증권, 재산이나 현금을 받을 권리를 제외하고, 전환일에 즉각 종료된다. 전환된 우선주식은 사라지고 우선주식으로 재발행되지 아니하며, 회사는 그에 따라 수권 우선주식의 수를 감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 나. 전환가격. 전환권 행사에 따라 교부될 전환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되는 우선주식의 수를 (x) 원발행가격으로 곱한 후 이를 (y) 전환가격(이하 정의됨)으로 나누고, 그 결과 값을 전환주식의 가장 가까운 정수로 만든 수로 한다. "전환가격"이란 전환시 전환주식이 교부되는 전환주식 1주당 가격을 말하며, 이는 맨 처음 31,962.33원이다. 전환가격과 원발행가격은 둘 다 본조 제(5)3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된다.
- 다. 전환주식의 단주발생. 동일한 보유자가 일시에 우선주식 1주 이상을 전환을 위해 에탁할 경우, 전환시 동일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전환주식 총수는 그 전환될 우선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환주식 단주는 전환시 교부되지 아니한다. 전환주식 단주는 가장 가까운 정수주로 만들며, 회사는 단주에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현금을 단주 대신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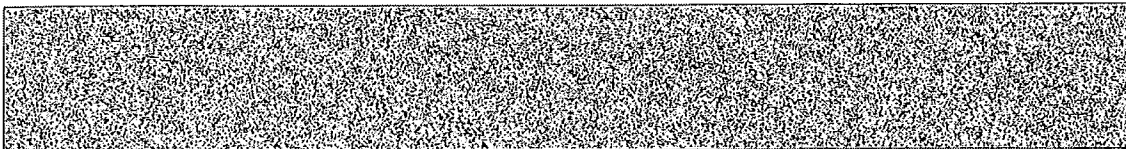
2. 전환절차.

- 가. 전환통지와 전환일. 제(5).3.마항에 달리 규정된 바 이외에,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우선주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에 관한 통지("전환통지") 2부를 작성 하여 우선주식의 주권과 함께 명의개서 대리인(혹은 회사가 자체 명의개서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경우 회사의 본점에)에게 제출한다. 일단 제출하면, 전환통지의 취소 불가능하게 행사되는 전환권과 관련된 주권은 제(5).3.마항에 규정된 바 이외에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철회될 수 없다.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18/34 -



등기번호	193415
------	--------

5조 및 제(5).3.마항에 정한 조건과 요건의 적용을 받아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여 전환 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 혹은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제출한 바로 다음 서울영업일(아래 (9)항에서 정의됨)을 "전환일"이라 한다. 한국상법 또는 (해당될 경우) 한국증권거래법의 목적상, 전환 요청은 전환일에 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해당 전환일부턴 모든 목적에서 있어 해당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교부될 전환주식의 공식적인 보유자로 간주되고 취급 받는다.

나. 비용과 세금. 회사는 우선주식의 전환시 전환주식의 발행이나 교부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 보수 및 경비(전환 및 그에 따른 주식발행에 관한 전문가의 보수 및 인자세 포함)를 지급하고 이로부터 우선주식 보유자들을 면책한다.

다. 전환주식의 등록과 교부. 전환통지 접수 후 가능한 즉시 그러나 늦어도 해당 전환일 이후 서울영업일 2일(단 아래 (z)의 경우는 서울영업일 5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결제일") 회사는 전환주식을 교부한다. 한국법의 적용을 받아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는 (x) 전환을 청구한 자가 전환주식에 대한 주권을 실제로 교부받코자 할 경우 해당 전환통지에 이 목적으로 거명한 인의 지시에 따라 당시 한국증권에탁원("주식 명의개서대리인")의 특정 서울 사무소에서, 해당보유자의 명의로 혹은 한국법률과 이 조건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해당전환통지에 이 목적으로 거명된 티인의 명의로 등록된 전환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도록 하거나 (y) 해당 보유자가 전환주식의 주권을 실제로 교부 받코자 할 경우, 해당 전환통지에 이 목적으로 거명된 인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해당 전환통지에 기재된 장소로(주식명의개서대리인의 당시 서울 사무소 이외) 그리고 명시된 방식으로(교부하는경비의 위험부담은 보유자의 거명된 인의 책임) 전환 주권을 교부하거나 교부도록 하거나 혹은 (z) 해당된다면, 한국증권에탁원(혹은 그 승계 조직)으로 하여금 전환주식을 해당 전환통지에 기재된 보관인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각각의 경우에, 회사는 전환시 교부되어야 할 기타 증권과 재산이나 현금을 교부하고, 전환하는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이전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도서 및 기타 문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도록 한다. 적용법규의 정관의 적용을 받아, 회사는 그 당시 한국법률상 우선주식을 합법적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시 교부된 전환주식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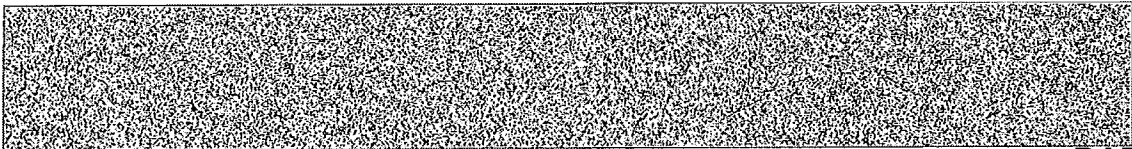
1. 전환주식

나. 전환가격. 전환권 행사에 따라 교부될 전환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되는 우선주식의 수를 (x) 원발행가격으로 곱한 후 이를 (y) 전환가격(이하 정의됨)으로 나누고, 그 결과 값을 전환주식의 가장 가까운 정수로 만든 수로 한다. "전환가격"이란 전환시 전환주식이 교부되는 전환주식 1주당 가격을 말하며, 이는 맨 처음 639,2466원이 다. 전환가격과 원발행가격은 둘 다 본 조 제(5)3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 전환주식의 단주발생. 동일한 보유자가 일시에 우선주식 1주 이상을 전환을 위해 예탁할 경우, 전환시 동일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전환주식 총수는 그 전환될 우선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환주식 단주는 전환시 교부되지 아니한다. 전환주식 단주는 가장 가까운 정수주로 만들며, 회사는 단주에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현금을 단주 대신 지급한다.

2. 전환절차.

가. 전환통지의 전환일. 제(5).3.마항에 달리 규정된 바 이외에,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우선주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에 관한 통지("전환통지") 2부를 작성 하여 우선주식의



등기번호

193415

주권과 함께 명의개서 대리인(혹은 회사가 자체 명의개서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경우 회사의 본점에)에게 제출한다. 일단 제출하면, 전환통지의 취소 불가능하게 행사되는 전환권과 관련된 주권은 제(5).3.마항에 규정된 바 이외에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5조 및 제(5).3.마항에 정한 조건과 요건의 적용을 받아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여 전환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 혹은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제출한 바로 다음 서울영업일(아래 (8)항에서 정의됨)을 "전환일"이라 한다. 한국상법 또는 (해당될 경우) 한국증권거래법의 목적상, 전환 요청은 전환일에 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해당 전환일로부터 모든 목적에서 있어 해당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교부될 전환주식의 공식적인 보유자로 간주되고 취급 받는다.

나. 비용과 세금. 회사는 우선주식의 전환시 전환주식의 발행이나 교부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 보수 및 경비(전환 및 그에 따른 주식발행에 관한 전문가의 보수 및 인자세 포함)를 지급하고 이로부터 우선주식 보유자들을 면책한다.

다. 전환주식의 등록과 교부. 전환통지 접수 후 가능한 즉시 그러나 늦어도 해당 전환일 이후 서울영업일 2일(단 아래 (z)의 경우는 서울영업일 5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결재일") 회사는 전환주식을 교부한다. 한국법의 적용을 받아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는 (x) 전환을 청구한 자가 전환주식에 대한 주권을 실제로 교부받코자 할 경우 해당 전환통지에 이 목적으로 거명한 인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식명의개서대리인의 특정 서울 사무소에서, 해당보유자의 명의로 혹은 한국법률과 이 조건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해당전환통지에 이 목적으로 거명한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전환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도록 하거나 (y) 해당 보유자가 전환주식의 주권을 실제로 교부받코자 할 경우, 해당 전환통지에 이 목적으로 거명한 인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해당 전환통지에 기재된 장소로 (주식명의개서대리인의 당시 서울 사무소 이외) 그리고 명시된 방식으로 (교부하는경비의 위험부담은 보유자의 거명한 인의 책임) 전환 주권을 교부하거나 교부도록 하거나 혹은 (z) 해당된다면, 주식명의개서대리인(혹은 그 승계 조직)으로 하여금 전환주식을 해당 전환통지에 기재된 보관인의 제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각각의 경우에, 회사는 전환시 교부되어야 할 기타 증권과 재산이나 현금을 교부하고, 전환하는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이전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도서 및 기타 문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도록 한다. 적용법규의 정관의 적용을 받아, 회사는 그 당시 한국법률상 우선주식을 합법적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시 교부된 전환주식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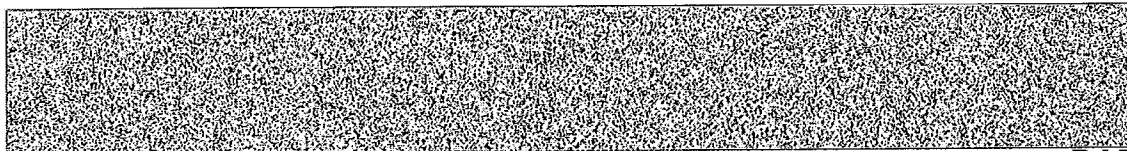
라. 마지막 배당금. 제(5)항에 의하여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전환일이 보통주식에 관한 배당금, 권리, 할당 혹은 기타 분배에 관한 기준일의 영업 종료 이후일 경우, 전환주식의 보유자는 기준일에 관하여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권리, 할당 혹은 기타 분배를 지급 받을 권리가 없다.

해당 전환일이 속하는 배당금발생기간(상기 제(2).2항에 정의)과 관련하여, 우선주식 전환에 따라 교부된 전환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그 전환이 해당 배당금발생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금발생기간 전체 기간에 관하여 지급한다. 전환주식은 모든 점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중인 보통주식과 동등한 순위를 갖는다(기준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E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20/34 -



등기번호

193415

일이 전환일에 앞서는 경우의 권리의 적용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배제된 권리는 제외).

3. 전환가격 조정.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본조 (2)항에 따른 배당금에 관한 권리와 (7)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에 추가로 (이를 침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가. 재분할, 병합 및 재분류. 회사가 기발행 보통주식을 재분할하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병합할 경우, 회사는 그와 같은 비율로 우선주식을 재분할하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숫자로 병합한다. 본조 제(2)항에 의한 주식배당, 무상의 주식분배 또는 무상 발행 뿐만 아니라 위의 같은 재분할 및 병합의 경우에, 원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은 각각 (x) 그러한 사태 직전의 기발행 우선주식수를 (y) 그러한 사태 직후의 기발행 우선주식 수로 나눈 분수를 곱한 원발행가의 전환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 나. 재분류. 회사가 보통주식을 회사의 다른 주식으로 재분류할 경우, 회사는 당시 기발행 우선주식의 과반수의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우선주식을 기타 증권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 부채증서 등의 분배. 회사가 보통주식 보유자들에게 회사의 자산, 부채증서, 주식자본이나 (보통주식 이외의) 증권 혹은 주식자본이나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옵션, 권리나 신주인수권(아래 (7)항의 신주인수권 및 이사회가 승인한 스톡옵션 제도에 따라 회사의 기존 종업원들에게 허가, 발행 또는 제공되어 종업원들이 수락한 옵션, 권리와 신주인수권은 제외함)을 분배할 경우, 회사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위의 동일한 자산, 부채증서, 주식자본이나 증권 혹은 주식자본이나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권리나 신주인수권을 비례적으로(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단일한 종류로 취급할 때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라. 추가 자본증권 주식 발행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발행일 이후 언제든지 혹은 때때로, 회사가 자본증권을 발행 내지 매각하고(단, (i) 제(2)항에 따르거나, (ii) 그에 따라 허가되거나 발행된 옵션, 권리, 보증이나 기타 증권에 따르거나, (iii) 이사회가 승인한 스톡옵션제도에 따라 회사의 기존의 종업원들에게 허가, 발행 혹은 제공되고 이들이 수락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자본증권의 경우는 제외) 그 대가로 회사가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일에 유효한 전환가격 미만(매각에 따른 양보, 할인 혹은 커미션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보통주식의 매각대금(또는 보통주식을 이외의 자본증권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대가금액)으로 받을 경우, 전환가격은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일의 영업종료 현재 다음의 분수를 곱한 전환가격으로 감소된다:

- (i)(x)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 기발행 보통주식의 수와 (y) 회사가 수령한 대가 총액 (또는 보통주식 이외의 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었던 대가금액이며, 어느 경우든 매각에 따른 양보, 할인 혹은 커미션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을,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일에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 (ii)(x)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일의 기발행 보통주식 수와 (y) 발행되거나 매각된 보통주식의 수(또는 보통주식 이외의 자본증권의 경우는 그러한 자본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 내지 교부가능한 보통주식의 수) 합계액으로 나눈 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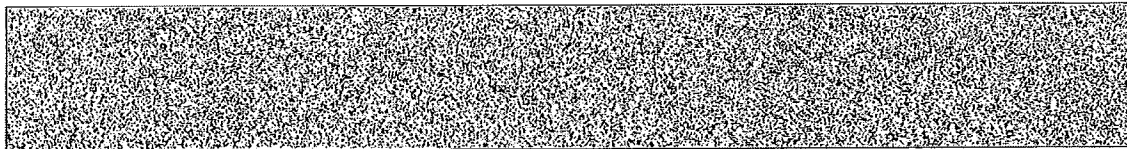
1. 전환주식

라. 미지급 배당금. 제(5)항에 의하여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전환일이 보통주식에 관한 배당금, 권리, 할당 혹은 기타 분배에 관한 기준일의 영업 종료 이후일 경우, 전환주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21/34 -



등기번호

193415

식의 보유자는 기준일에 관하여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권리, 할당
혹은 기타 분배를 지급 받을 권리가 없다.

해당 전환일이 속하는 배당금발생기간(상기 제(2).2항에 정의)과 관련하여, 우선주식
전환에 따라 교부된 전환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그 전환이 해당 배당금발생기간의 시작
과 동시에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금발생기간 전체 기간에 관하여 지급한다. 전
환주식은 모든 점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중인 보통주식과 동등한 순위를 갖는다(기준
일이 전환일에 앞서는 경우의 권리의 적용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배제된 권리는 제
외).

3. 전환가격 조정.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본조 (2)항에 따른 배당금에 관한 권리와 (6)항에 따른 신주인수
권에 추가로 (이를 침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재분할, 병합 및 재분류. 회사가 기발행 보통주식을 재분할하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병합할 경우, 회사는 그의 같은 비율로 우선주식을 재분할하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숫자로 병합한다. 본조 제(2)항에 의한 주식배당, 무상의 주식분배 또는
무상 발행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분할 및 병합의 경우에, 원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은
각각 (x) 그러한 사태 직전의 기발행 우선주식수를 (y) 그러한 사태 직후의 기발행 우
선주식 수로 나눈 분수를 곱한 원발행가와 전환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나. 재분류. 회사가 보통주식을 회사의 다른 주식으로 재분류할 경우, 회사는 당시 기발행
우선주식의 과반수의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우선주식을 기타 증권으로 전환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다. 부채증서 등의 분배. 회사가 보통주식 보유자들에게 회사의 자산, 부채증서, 주식자
본이나 (보통주식 이외의) 증권 혹은 주식자본이나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
는 옵션, 권리나 신주인수권(아래 (7)항의 신주인수권 및 이사회가 승인한 스톡옵션
제도에 따라 회사의 기존 종업원들에게 허가, 발행 또는 제공되어 종업원들이 수락한
옵션, 권리의 신주인수권은 제외함)을 분배할 경우, 회사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위의 동일한 자산, 부채증서, 주식자본이나 증권 혹은 주식자본이나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 권리나 신주인수권을 비례적으로(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단일한 종류
로 취급할 때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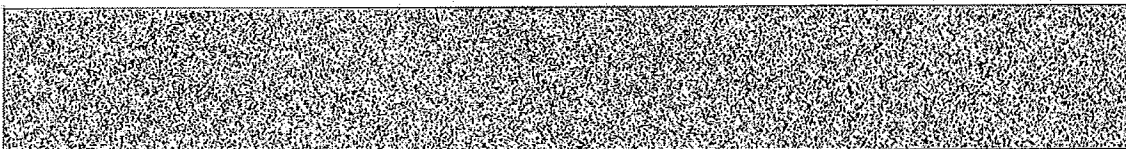
라. 추가 지분증권 주식 발행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발행일 이후 언제든지 혹은 때때
로, 회사가 지분증권을 발행 내지 매각하고(단, (i) 제(2)항에 따르거나, (ii) 그에 따라
허가되거나 발행된 옵션, 권리, 보증이나 기타 증권에 따르거나, (iii) 이사회가 승인
한 스톡옵션제도에 따라 회사의 기존의 종업원들에게 허가, 발행 혹은 제공되고 이들
이 수락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지분증권의 경우는 제외) 그 대가로 회사가 그
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일에 유효한 전환가격 마만을 (매각에 따른 양보, 할인 혹은
커미션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보통주식의 매각대금(또는 보통주식을 이외의 지분
증권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대가금액)으로 받을 경우, 전환가격은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일의 영업종료 현재 다음의 분수를 곱한 전환가격으로
감액된다:

(i)(x)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 기발행 보통주식의 수와 (y) 회사가 수령한 대가 총액
(또는 보통주식 이외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었던 대가금액이며, 어느
경우든 매각에 따른 양보, 할인 혹은 커미션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을,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일에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22/34 -



등기번호

193415

(ii)(x)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 직전일의 기발행 보통주식 수와 (y) 발행되거나 매각된 보통주식의 수(또는 보통주식 이외의 지분증권의 경우는 그러한 지분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 내지 교부가능한 보통주식의 수) 합계액으로 나눈 분수.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본조 제(5).3.리항의 목적상, 보통주식 이외의 지분증권(보통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하거나 또는 그로 전환 내지 교환이 가능한 권리를 갖는 옵션, 권리, 인수권 또는 전환 내지 교환증권을 말함)의 경우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가의 총액은 (i) 그와 같은 지분증권에 대해 회사가 받은 대가금액 및 (ii) 그 지분증권에 수반된 권리의 행사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가 금액의 합계로 한다. 보통주식 주당 대가는 위와 같은 대가 총액을 위 지분증권에 수반된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숫자로 나눈 값으로 한다(옵션, 권리 또는 인수권의 경우는 최초 인수 또는 매각가격으로, 전환 또는 교환부 증권의 경우에는 최초 전환 또는 교환가격으로 함)

따. 특별거래시 조정. 기발행 우선주식의 66과 2/3% 이상의 보유자들이 달리 취급하겠다는 의결하지 않는 한, 특별거래(이하 정의)가 발생할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text{신규 전환가격} = \text{OP} \times ((Y \times E) - (L \times Y)) / ((Y \times E) + (L \times Z))$$

OP = 특별거래에 따른 조정 직전에 유효한 전환가격

E = 특별거래의 결과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 혹은 지급하는데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배분에 관한 것을 포함함) 이용할 수 있는 수익금 총액

L =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배분 총액

Y = 특별거래에 관련된 조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전에 유효한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우선주식의 전환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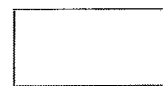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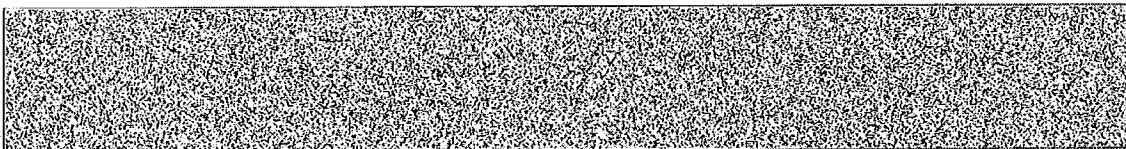
Z = 특별거래에 관련된 조정의 발효 전에 유효한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완전히 회석된 기준(아래 (9)항에 정의)에 의한 보통주식의 수. 단,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은 제외.

"특별거래"란 (i) 또는 (ii)에 정한 사태를 말한다:

(i) 주식 매각(지급 조성 목적의 회사에 의한 주식 매각은 제외), 회사정리, 합병이나 병합 등의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다른 단체가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 그러한 거래 직전 회사의 기발행 의결권부 증권의 보유자들이 (기발행인체로 남아 있는 의결권부 증권 내지 존속하는 회사의 의결권부 증권으로 전환되는 의결권부 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그러한 거래 전에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따라서, 회사나 존속 회사의 의결권부 증권이 표창하는 총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게 될 경우의 거래를 제외.

(ii)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에서 단일한 인 혹은 단체가 회사의 기발행 주식자본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 직후 동인이나 동 단체가 (각각 그 특수관계인과 함께) 회사의 기발행 의결권부 증권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기발행 주식의 인수.

특별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가능한 한 곧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특별거래 예정 중 결일 15영업일 전까지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특별거래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통지("특별거래통지")의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거래 문건 사본과 우선주식 보유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게 될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거래로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분배



등기번호	193415
------	--------

될 것으로 간주될 금액은 회사, 인수인, 인수회사 또는 기타 인수단체가 그 보유자들에게 분배할 현금, 재산, 권리 또는 증권이다. 우선주식 보유자가 우선주식을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할 경우, 특별거래통지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지와 우선주식에 대한 주권(전세계적 양식의 우선주식은 제외)을 함께 제출한다. 특별거래 조건이 대가의 액수나 성질의 변경을 포함하여 특별거래 통지일 이후 증대하게 변경될 경우, 회사는 즉각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그러한 변경을 통보하고 변경된 조건을 기재한 서면통지("증대환 변경통지")를 제공한다. 이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i) 전환 결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ii) 증대환 변경통지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 정관상 상반되는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5)3.마항에 의한 전환은 특별거래 종결 직전까지는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특별거래가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제(5)3.마항에 의한 전환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전환하겠다는 결정도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며 더 이상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1. 전환주식

본조 제(5).3.리항의 목적상, 보통주식 이외의 지분증권(보통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하거나 또는 크로 전환 내지 교환이 가능한 권리를 갖는 옵션, 권리, 인수권 또는 전환 내지 교환증권을 말함)의 경우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가의 총액은 (i) 크와 같은 지분증권에 대해 회사가 받은 대가금액 및 (ii) 크 지분증권에 수반된 권리의 행사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가 금액의 합계로 한다. 보통주식 주당 대가는 위와 같은 대가 총액을 위 지분증권에 수반된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숫자로 나눈 값으로 한다(옵션, 권리 또는 인수권의 경우는 최초 인수 또는 매각가격으로, 전환 또는 교환부 증권의 경우에는 최초 전환 또는 교환가격으로 함)

마. 특별거래시 조정. 기발행 우선주식의 66과 2/3% 이상의 보유자들이 달리 취급하겠다고 의결하지 않는 한, 특별거래(이하 정의)가 발생할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text{신규 전환가격} = OP \times ((Y \times E) - (L \times Y)) / ((Y \times E) + (L \times Z))$$

OP = 특별거래에 따른 조정 직전에 유효한 전환가격

E = 특별거래의 결과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 혹은 지급하는데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배분에 관한 것을 포함함) 이용할 수 있는 수익금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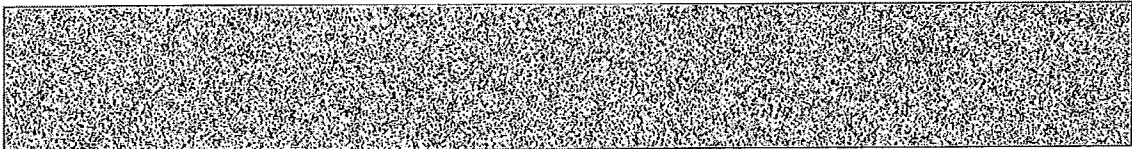
L =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배분 총액

Y = 특별거래에 관련된 조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전에 유효한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우선주식의 전환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의 수

Z = 특별거래에 관련된 조정의 발효 전에 유효한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완전히 희석된 기준(아래 (8)항에 정의)에 의한 보통주식의 수. 단,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은 제외.

"특별거래"란 (i) 또는 (ii)에 정한 사태를 말한다:

(i) 주식 매각(자금 조성 목적의 회사에 의한 주식 매각은 제외), 회사정리, 합병이나 병합 등의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다른 단체가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 그러한 거래 직전 회사의 기발행 외결권부 증권의 보유자들이 (기발행인채로 남아 있는 외결권부 증권 내지 존속하는 회사의 외결권부 증권으로 전환되는 외결권부 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그러한 거래 전에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따라서, 회사나 존속 회사의 외결권부 증권이 표창하는 총 외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외결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게 될 경우의 거래를 제외.



등기번호	193415
------	--------

(ii)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에서 단일한 인 혹은 단체가 회사의 기발행 주식자본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 직후 동인이나 동 단체가 (각각 그 특수관계인과 함께) 회사의 기발행 의결권부 증권외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기발행 주식의 인수.

특별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가능한 한 곧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특별거래 예정 종결일 15영업일 전까지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특별거래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통지("특별거래통지")와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거래 문건 사본과 우선주식 보유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게 될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거래로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간주될 금액은 회사, 인수인, 인수회사 또는 기타 인수단체가 그 보유자들에게 분배할 현금, 재산, 권리 또는 증권이다. 우선주식 보유자가 우선주식을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할 경우, 특별거래통지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지의 우선주식에 대한 주권(전세계적 양식의 우선주식은 제외)을 함께 제출한다. 특별거래 조건이 대가의 액수나 성질의 변경을 포함하여 특별거래 통지일 이후 증대하게 변경될 경우, 회사는 각각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그러한 변경을 통보하고 변경된 조건을 기재한 서면통지("증대한 변경통지")를 제공한다. 이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들은 (i) 전환 결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ii) 증대한 변경통지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 정관상 상반되는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5)3.마항에 의한 전환은 특별거래 종결 직전까지는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특별거래가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제(5)3.마항에 의한 전환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전환하겠다는 결정도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며 더 이상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회사가 특별거래를 계획하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회사는 (i)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 배분권과 우선권이 실현되고 (ii) 특별거래 수익금을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하는 우선주식 보유자들에게 전환 이후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위 (i)과 (ii) 각각의 경우에 특별거래에 관한 계약상 잔여재산 우선배분과 우선권에 따른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 제(5)3.마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제(5)3.마항이 충족될 때까지 거래의 실행을 연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거래를 취소하며, 취소할 경우, 우선주식 보유자의 권리, 우선권과 특권은 1차 특별거래통지일 직전에 존재하는 권리, 우선권과 특권으로 복구한다.

4. 주식의 준비.

회사는 우선주식의 전환을 실행할 목적으로 모든 기발행 우선주식에 관해 전환권 행사 시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전환주식의 수권주식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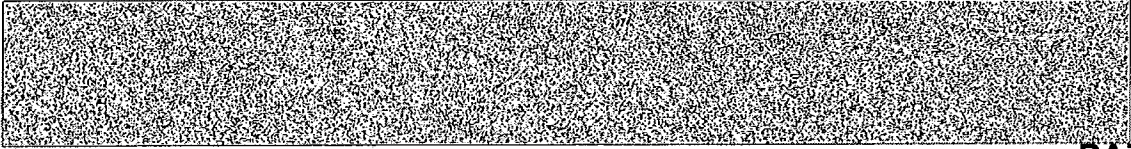
5. 병합, 합병등에 관한 준비

다른 인이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회사의 신설합병하거나, 회사가 다른 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인과 신설합병하거나 (회사가 존속기업으로 남는 경우나 보통주식의 재분류, 전환, 교환이나 소각을 초래하지 않는 합병의 경우는 제외) 또는 회사의 기발행 주식 전부를 교환 하거나 회사의 기발행주식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창설할 경우, 회사는 그러한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으로 초래되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25/34 -



등기번호	193415
------	--------

는 인 혹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은 본조 제(5)항에 규정된 조정과 현실적으로 거의 유사한 조정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당시의 기발행 우선주식의 보유자가 그 후에도 그러한 우선주식을 위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 혹은 포괄적인 주식교환이나 포괄적인 주식이전 직전에 전환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종류의 금액, 주식, 기타 증권 및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단, 그러한 전환은 본조 제(5)3.마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보유자는 회사의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된 인 혹은 포괄적인 주식교환이나 포괄적인 주식이전이 이루어진 인 혹은 지주회사("구성인") 혹은 구성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이나 포괄적인 주식교환이나 포괄적인 주식 이 전 시 받을 수 있는 종류나 금액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 현금이나 기타 재산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그러한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 포괄적인 주식교환이나 포괄적인 주식 이 전 시 받을 수 있는 종류나 금액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 현금과 기타 재산이 그러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보통주식("비행사 주식")과 같지 않을 경우, 본조 제(5).5항의 목적상 그러한 합병이나 포괄적인 주식교환이나 포괄적인 주식 이 전 시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금액, 주식, 기타 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은 비행사주식 다수가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금액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5).5항은 후속적인 흡수합병, 신설합병,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6. 침해금지.

회사는 정관개정 혹은 회사정리, 자산이전, 합병, 해산, 증권의 발행이나 매각 혹은 기타 지배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 조건에 따라 준수해야 하거나 혹은 이행해야 할 조건의 준수나 이행을 회피하거나 회피하고자 해서는 아니되며, 언제나 성실하게 본조 제(5)항의 모든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며, 이 조건에 정한 범위에서 우선주식 보유자들의 전환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한다.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7. 시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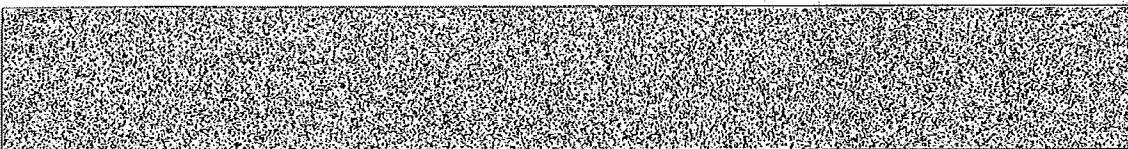
이사회는 의견으로 본조 (5)항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거나 혹은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러한 규정의 필수적인 취지와 원칙에 따라 우선주식 보유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사회는 동 규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을 조정하여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8. 조정에 관한 확인서.

본조 (5)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혹은 재조정인 경우, 회사는 지기 비용으로 연말감사의 일환으로, 이 조건에 따른 조정 혹은 재조정을 계산하고 회사가 선정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러한 계산을 검증하여 우선주식 보유자에게 조정 내지 재조정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토록 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우선주식의 보유자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당해 보유자에게 (i) 조정과 재조정, (ii)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및 (iii) 우선주식의 전환시 당시 받게될 보통주식의 수와 기타 재산의 금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한다.

(6) 상환.

1. 우선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자산이 있을 경우, 회사는 발행일 5주년일부디 발행일 20주년일까지 기간동안 언제든지 기발행 우선주식의 66과



등기번호	193415
------	--------

2/3 % 이상의 보유자들로("상환결정우선주주")부터 우선주식을 상환하겠다는 결정에 관해 서면통지를 받게 되면, 그러한 상환결정우선주주의 우선주식의 기타 참가 보유자들이 보유한 기발행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가격(이하 정의함)을 상환통지 접수 후 120일째("상환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상환결정 우선주주로부터 통지 접수시, 회사는 서울영업일 5일 이내에 기타 우선주식 보유자 모두에게 상환결정우선주주부의 결정에 관해 서면통지를 제공하여 그러한 보유자들이 상환에 참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통지").

2. 우선주식의 각 상환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가격("상환가격")은 잔여재산 우선분배와 동등하다.
3. 예정된 상환일 또는 그 이전까지, 우선주식의 각 보유자는 그러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상환가격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제출된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의 일부만 상환될 경우, 회사는 미상환된 주식에 관한 신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4. 본조 (6)항에 규정된 상환권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할 경우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상환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급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후 법률적으로 이용가능한 지급이 생기면 곧 상환해야 하고 이때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한국증권업협회(또는 그 승계인)가 상환가격을 지급해야 하는 날 직전 5영업일 동안 1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그 인터넷 웹사이트(www.ksdabond.or.kr)로 공표한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에 연 3%를 합한 연요율로 각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 상환기일부터, 상환가격의 지급불이행이 있지 않는 한, 상환통지에 상환하겠다고 지정된 우선주식의 보유자들의 권리(주권의 제출시 이지 없이 상환가격을 받을 권리는 제외)는 그러한 우선주식에 관하여 종료된다. 그러한 우선주식은 그 후 회사의 장부상 기재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경우에 따라 각 시점에 존재하는 우선주식의 권리 이외에, 상환기일에 우선주식의 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지급이 그날 상환되어야 할 우선주식 총수를 상환하기에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급을 최대한 이용하여 우선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상환될 우선주식의 보유자들 간에 비례적으로 우선주식의 최대한을 상환한다. 상환되지 아니한 우선주식은 기발행으로 남으며 이 정관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우선권을 보유한다.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시점에 존재하는 우선주식의 권리 이외에, 회사의 추가 지급을 우선주식 상환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동 지급은 회사가 상환기일에 상환했어야 하지만 상환되지 아니한 주식의 잔여분을 상환하는데 즉시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 주식 잔여분을 상환할 때까지 기타 종류나 시리즈의 주식에 대한 지급은 행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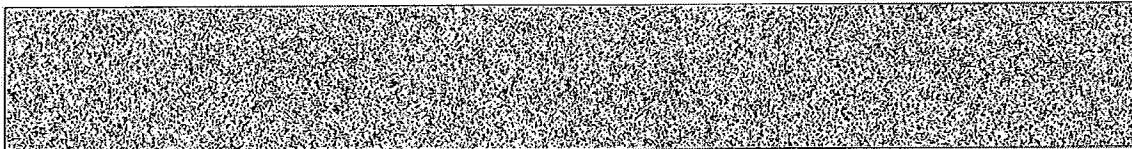
1. 상환주식

7. 시정조치.

이사회 의결로 본조 (5)항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거나 혹은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러한 규정의 필수적인 취지와 원칙에 따라 우선주식 보유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사회는 동 규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을 조정하여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8. 조정에 관한 확인서.

본조 (5)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혹은 제조정의 경우, 회사는 자기 비용으로 연말감사의 일환으로, 이 조정에 따른 조정 혹은 제조정을 계산하고 회사가 선정한 독립적



등기번호	193415
------	--------

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러한 계산을 검증하여 우선주식 보유자에게 조정 내지 재조정
 정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토록 한다. 회사
 는 언제든지 우선주식의 보유자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당해 보유자에게 (i) 조정과
 재조정, (ii)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및 (iii) 우선주식의 전환시 당시 받게될 보통주식의
 수와 기타 재산의 금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한다.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6년 01월 09일 등기
 2006년 06월 11일 말소 2006년 06월 19일 등기

(7) 신주인수권.

정관에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회사가 지분증권(아래 (9)항에 정의됨)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의 보유자들과 우선주식의 보유자들은 그러한 지분증권을 각각의 지분
 비율(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동류의 증권으로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인수
 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8) 기타.

1. 주권의 제출 및 등록. 회사는 본점 혹은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소에 우선
 주식 등록을 위한 명부를 비치한다. 동 장소에서 우선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제출될
 경우, 회사는 주권의 공식적인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된
 주권과 교환으로 신규 주권을 작성 및 교부한다. 각 신규주권은 제출된 주권의 보유자
 가 요청한 명의로 등록되며, 그러한 주권은 요청된 우선주식의 수량을 표창하고 제출
 된 주권과 형식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2. 교체. 우선주식의 소유권 및 우선주식 주권의 손실, 도난, 파기 혹은 훼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접수하거나, 주권의 손실, 도난 또는 파기의 경우에 회사에 합리적으로 만족스
 러운 면책 및 그러한 주권의 재권판결이 있거나, 혹은 주권이 훼손된 경우의 그 훼손된
 주권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식 보유자의 경비 부담으로 손실, 도난, 파기 혹은
 훼손된 주권으로 표창되는 같은 수의 우선주식을 표창하는 유사한 종류의 신규 주권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3. 분리가능성. 본조에 규정된 조건의 어느 규정이 무효, 불법 혹은 집행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합법성과 집행가능성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거나 그에 의
 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
4. 인수주식의 지위. 회사가 취득하는 우선주식은 소각되며 더 이상 회사의 수권주식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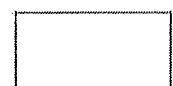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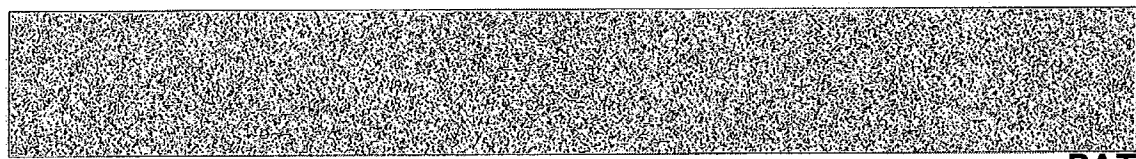
(9) 추가 정의.

본 제8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특수관계인"이란 어느 인에 관하여 (a) 그러한 인을 직접 혹은 중개인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지배하거나 그러한 인의 지배를 받거나 혹은 공동지배하에 있거나, (b) 그러한
 인이나 (a)항에 기재된 인의 임원, 이사, 무한책임사원, 수탁자 혹은 관리자이거나 또
 는 (c) 그러한 인이나 혹은 (a)항이나 (b)항에 기재된 개인의 친족이 되는 다른 인을
 말한다. 이 정의에 사용될 때, "친족"이란 어느 개인에 관하여 (i) 동인의 배우자, (ii)

직계비속 혹은 동인이나 동인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교조부모 혹은 형제(혈연 또
 는 입양을 모두 포함) 및 (iii) 직전 (ii)항에 기재된 인의 배우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란 한국 서울 또는 뉴욕주 뉴욕시의 토요일, 일요일 내지 은행이 법에 의하여
 휴업해야 하거나 휴업할 수 있는 다른 날을 말한다.



등기번호	193415
------	--------

3. "주식지분"이란 어느 인에 관하여 언제든지, 동인에 대한 또는 동인이 발행한 지분에 관한 주식, 이권, 참여권 또는 그의 유사한 등가물(명칭이나 의결권여부를 불문함), 파트너쉽 지분(무한 또는 유한책임 여부 불문함) 또는 그의 유사한 소유권에 관한 이권을 말하며, 회사에 있어서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포함한다.
4. "지분증권"이란 회사의 주식지분상의 모든 주식과, 그러한 주식으로 전환, 교환 혹은 행사 가능한 회사의 증권 및 그러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인수권 내지 기타 권리와 지분증권을 받을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을 말한다.
5. "완전 희석된 기준"이란 의결권부 증권에 관하여 결정일에 발행,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부 증권(의결권부 증권제외), 의결권부 증권으로 교환이나 전환이나 행사 가능한 (부대조항이나 시간의 경과 혹은 양지를 선행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불문) 워런트, 권리나 옵션에 의하여 발행 가능한 의결권부 증권(의결권부 증권)의 수를 말한다.
6. "인"이란 개인, 법인, 유권책임회사, 조합, 합작회사, 연합, 주식회사, 신탁, 비법인, 기타 법인, 정부나 그 기관 내지 정치적 허부조직 또는 상기 조직들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을 말한다.
7. "서울영업일"이란 한국 서울의 토요일, 일요일 혹은 한국 서울에서 법에 의하여 휴업해야 하거나 휴업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이날이 뉴욕주 뉴욕시의 영업일인지 여부를 불문함).
8. "의결권부 증권"이란 이시 선출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의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의 주식을 말한다.

2004 년 12 월 30 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6) 신주인수권.

정관에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회사가 지분증권(아래 (8)항에 정의됨)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의 보유자들과 우선주식의 보유자들과 그러한 지분증권을 각각의 지분 비율(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동류의 증권으로 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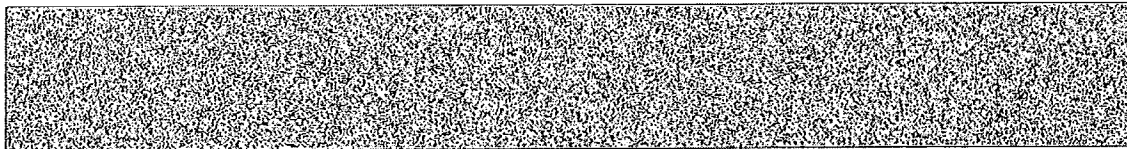
(7) 기타.

1. 주권의 제출 및 등록. 회사는 본점 혹은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소에 우선 주식 등록을 위한 명부를 비치한다. 동 장소에서 우선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제출될 경우, 회사는 주권의 공식적인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된 주권과 교환으로 신규 주권을 작성 및 교부한다. 각 신규주권은 제출된 주권의 보유자가 요청한 명의로 등록되며, 그러한 주권은 요청된 우선주식의 수량을 표창하고 제출된 주권과 형식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2. 교체. 우선주식의 소유권 및 우선주식 주권의 손실, 도난, 파기 혹은 훼손을 증빙하는 자료를 접수하거나, 주권의 손실, 도난 또는 파기의 경우에 회사에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면책 및 그러한 주권의 채권판결이 있거나, 혹은 주권이 훼손된 경우의 그 훼손된 주권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식 보유자의 경비 부담으로 손실, 도난, 파기 혹은 훼손된 주권으로 표창되는 같은 수의 우선주식을 표창하는 유사한 종류의 신규 주권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3. 분리가능성. 본조에 규정된 조건의 어느 규정이 무효, 불법 혹은 집행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합법성과 집행가능성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거나 그에 의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29/34 -



등기번호	193415
------	--------

~~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

4. ~~인수주식의 지위. 회사가 취득하는 우선주식은 소각되며 더 이상 회사의 수권주식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8) ~~추가 정의.~~

~~본 제8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특수관계인"이란 어느 인에 관하여 (a) 그러한 인을 직접 혹은 중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그러한 인의 지배를 받거나 혹은 공동지배하에 있거나, (b) 그러한 인이나 (a)항에 기재된 인의 임원, 이사, 무한책임사원, 수탁자 혹은 관리자이거나 또는 (c) 그러한 인이나 혹은 (a)항이나 (b)항에 기재된 개인의 친족이 되는 다른 인을 말한다. 이 정의에 사용될 때, "친족"이란 어느 개인에 관하여 (i) 동인의 배우자, (ii)~~

~~직계비속 혹은 동인이나 동인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 혹은 형제 (혈연 또는 입양을 모두 포함) 및 (iii) 직전 (ii)항에 기재된 인의 배우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란 한국 서울 또는 뉴욕주 뉴욕시의 토요일, 일요일 내지 은행이 법에 의하여 휴업해야 하거나 휴업할 수 있는 다른 날을 말한다.~~

3. ~~"주식지분"이란 어느 인에 관하여 연채든지, 동인에 대한 또는 동인이 발행한 자본에 관한 주식, 이권, 참여권 또는 그의 유사한 등가물(명칭이나 의결권여부를 불문함), 파트너십 지분(무한 또는 유한책임 여부 불문함) 또는 그의 유사한 소유권에 관한 이권을 말하며, 회사에 있어서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포함한다.~~

4. ~~"지분증권"이란 회사의 주식지분상의 모든 주식과, 그러한 주식으로 전환, 교환 혹은 행사 가능한 회사의 증권 및 그러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인수권 내지 기타 권리와 지분증권을 받을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을 말한다.~~

5. ~~"완전 회석된 기준"이란 의결권부 증권에 관하여 결정일에 발행,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부 증권의 수의 증권(의결권부 증권제외), 의결권부 증권으로 교환이나 전환이나 행사 가능한 (부대조항이나 시간의 경과 혹은 양자를 선행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불문) 워런트, 권리나 옵션에 의하여 발행 가능한 의결권부 증권의 수를 더한 수를 말한다.~~

6. ~~"인"이란 개인, 법인, 유한책임회사, 조합, 합작회사, 연합, 주식회사, 신탁, 비법인, 기타 법인, 정부나 그 기관 내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상기 조직 들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을 말한다.~~

7. ~~"서울영업일"이란 한국 서울의 토요일, 일요일 혹은 한국 서울에서 법에 의하여 휴업해야 하거나 휴업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아날이 뉴욕주 뉴욕시의 영업일인지 여부를 불문함).~~

8. ~~"의결권부 증권"이란 이시 선출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의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의 주식을 말한다.~~

2005 년 12 월 02 일 변경 2006 년 01 월 09 일 등기

2006 년 06 월 11 일 말소 2006 년 06 월 19 일 등기

1. 흡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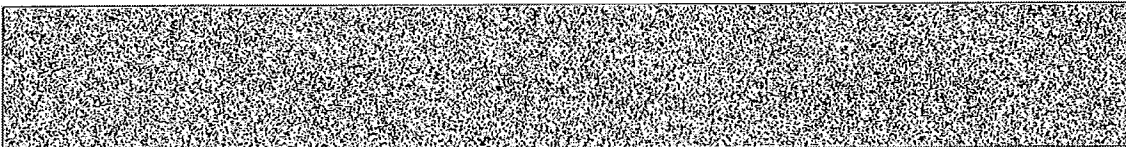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을 합병

2011 년 08 월 31 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F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30/34 -



등기번호	193415
------	--------

지점에 관한 사항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4-6-13번지 파레스튜디오 마타 203호(일본지점)	
2007년 10월 31일 설치	2007년 11월 14일 등기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토라노몬 시초메 1-17 카미야초 프라이무프레이스빌딩 9층(일본지점)	
2009년 03월 04일 이전	2009년 03월 18일 등기
싱가포르국 테마섹 6번대로 썬텍타워 4동 8층(싱가포르지점)	
2008년 11월 17일 설치	2008년 11월 27일 등기
싱가포르국 리버 벨리 로드 401 벨리 포인트 14층 4호(싱가포르지점)	
2009년 11월 17일 이전	2009년 11월 23일 등기
2010년 06월 10일 폐지	2010년 06월 22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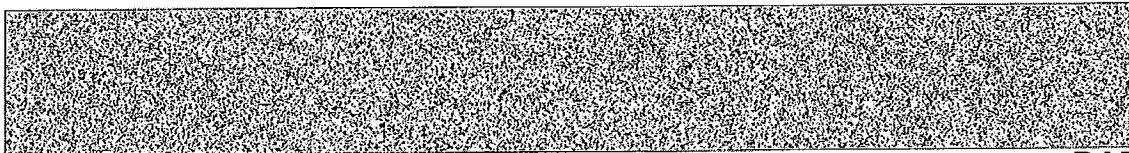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김은태 760415-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환진로즈힐어파트 104-1303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지회계해상보험빌딩 6-8층(본점)
2007년 03월 29일 선임	2007년 04월 11일 등기
2010년 01월 22일 사임	2010년 01월 22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이 회사는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인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인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외의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 외인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채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협회등록 및 상장이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하는 가격에 의하고, 협회등록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가격에 의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31/34 -



등기번호

193415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1년 03월 30일 설정 2001년 04월 13일 등기 >

(1)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보통주식 삼십만주(300,000)주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장공정가치간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로 인한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이사회가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정한 당해 주식의 시장공정가치

나.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장공정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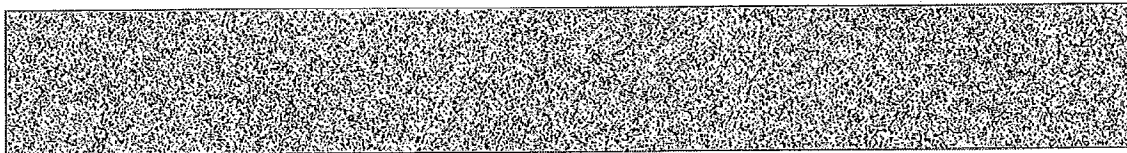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4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50%는 각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로부터, 나머지 50%는 그 후로부터 2년에 걸쳐 매월에 걸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각각 그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32/34 -



등기번호

193415

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4 년 12 월 22 일 변경 2004 년 12 월 30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비율 중 낮은 비율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장공정가치간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제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로 인한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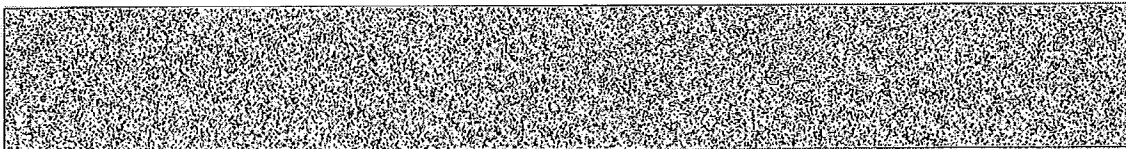
-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이사회가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정한 당해 주식의 시장공정가치
 - 나.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장공정가치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4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50%는 각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로부터, 나머지 50%는 그 후로부터 2년에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33/34 -



등기번호 193415

걸쳐 매월에 걸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각각 그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5년 12월 02일 변경 2005년 12월 12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0년 04월 07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0년 04월 07일 등기

수수료 800원 영수함 --- 이하 여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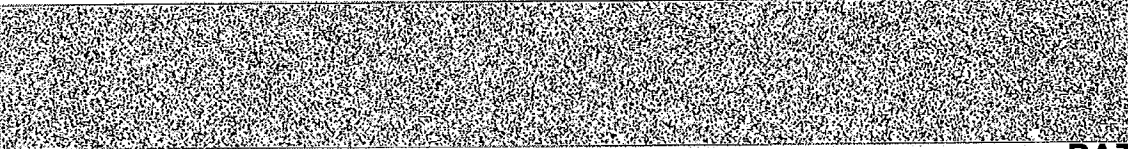
서기 2011년 09월 0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4155-AAMB-EUQL
00002200151114039901111101204131B9DABFEBEC1F819670917 10 발행일:2011/09/01 - 34/34 -



PATENT